

2023 육상 전임지도자 채용 공고

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전임지도자를 공개 채용합니다.

2022년 11월 7일

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

I. 채용개요

분야	채용형태	인원	업무내용
전임지도자 [육상]	계약직	1명	1.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·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2.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. 꿈나무,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4. 국내·외 대회 관련 업무 및 경기력 분석업무 5.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6.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

II. 지원 자격요건

전임지도자 자격요건
1.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.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• 경력 및 증빙자료 필 제출 •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자 (채용 후 2023년도 지도자 등록기간 내 등록 필) • <u>전임지도자운영규정 결격사유(제5조 채용결격사유)</u> 필히 숙지

III. 근무형태 및 조건

(조건)	주 5일제 근무, 1일 8시간(월~금, 09:00~18:00) * 훈련 및 대회 등 관련으로 출장 및 주말근무 가능.
(장소)	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및 국내·외 출장(훈련포함)
(급여조건)	3,000,000/월_세전금액
(복리후생)	4대 보험 의무가입, 퇴직충당금, 명절휴가비
(계약기간)	2023. 12. 31. 까지 *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연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(평가)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.

IV. 전형일정

구 분	일 자	비 고
공고 원서접수	2022. 11. 7.(월) ~ 2022. 11. 18.(금)	18시까지
1차 서류전형	2022. 11. 21.(월)	합격자 개별 통지
2차 면접전형	2022. 11. ~ 12. 중	합격자 개별 통지
3차 채용심의	2022. 12. 중	면접전형 합격자 한하여 진행
최종 합격자 발표	개별 안내	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
근무시작	2023. 1. 1.(예정)	

* 일정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(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, 2차 평가 실시 및 3차 심의 후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채용)

V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진 부착)
-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(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포함) 각 1부
*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,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
- 활동계획서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) 1부
- 경력증명서(근무기간, 직급, 담당업무 기재) 1부
-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

7. 접수방법 및 접수처

- (접수기간) 2022. 11. 7.(월) ~ 2022. 11. 18.(금) 18:00까지
- (접수방법) 온라인 접수 (마감일 기준 18:00까지)
- (접수처) E-mail : kafdkorea@hanmail.net (제목 : 전임지도자채용 응시 김육상)
- (문의사항)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☎ 02-455-4081

8.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,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채용이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및 채용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
- 지원자 중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
- 붙임문서에 의하지 않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(별도 연락X)
-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 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통보 드립니다.

참고. 결격사유

전임지도자 운영규정 제5조(채용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8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(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)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)
9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, 사의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0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1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12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1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14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15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